

##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

2024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, 내용을 참고하여 이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8월 16일

경기도지사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
### □ 목적

-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치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민간 주도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

### □ 지원대상

- 발전사업허가증 기준 설비용량 300kW 이상\* 태양광 발전시설(자가용, 상업용)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
  - 도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(산단 RE100 참여기업 우선지원)
  - '24.1.1. 이후 공사계획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(既 준공사업 제외)
- \* 보증사업 지원규모(대출한도 5억원, 약 300KW 설치가능) 이상의 발전시설 지원
- \* 공사계획 (변경)신고 수리가 '24.1.1. 이후로 공사(착수)일이 '24.1.1.이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해 인정

### □ 지원 제외대상

- 휴·폐업 중인 자
- 국세,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또는 용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용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
-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
-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용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최근 5년 이내 경기도 에너지 용자지원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자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
#### □ 의무사항

-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계획서의 설비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고, 변경 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.
-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용자 한도액의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하며, 이자차액 보전은 감소된 금액으로 적용됨
- 신청 후 용자 또는 이자차액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난 후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.
- 용자 또는 이자차액 승인은 경기도 자체 심의에 의하며, 심의결과에 따라 용자 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.
- 용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,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시 용자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음.
- 용자 지원 대상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,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'완료보고서'[별지 제7호 서식]를 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

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
- 용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추천 대상자로 선정, 승인 및 이차액지원을 받은 때에는 용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용자 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, 향후 3년 간 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

## □ 지원방식

- 민간 금융기관 용자한도 및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 방식으로 지원

## □ 지원내용

-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(VAT 포함)
- 지원한도 : 설치자금의 85% 이내
- 이차보전기간 : 3년간

\* 은행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
## □ 용자조건

- 용자금리 : 협약은행 대출금리에서 3% 차감(회계연도별 변동금리)

\*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\*\* 용자금리는 협약은행별 대출금리에서 3%(이차보전금) 차감, 총금리는 이차보전금에 따른 금리 인하를 적용하며 최저 고객 부담금리는 1.8%로 한다.

\*\*\* 최저 고객 부담금리 1.8%는 '24. 10. 1.부터 적용한다.

- 이차보전금 지원규모 : **10억원**

- 용자한도 : 신청자 당 최대 1,700,000천원

\* 이차지원 사업 용자는 2백만원/KW 「'24년 융복합지원 사업」 태양광 건물 지원단가를 준용함

- 취급은행 및 용자기간
  - 국민은행 : 3년거치, 12년 균등분할상환
  - 농협은행 : 1년거치, 9년 균등분할상환
  - 신한은행 : 3년거치, 7년 균등분할상환
- \* 담보조건은 해당 은행별 협약조건에 따름

- 담보 등 :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
- \* 용자지원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

## 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'24. 6. 7.(금) ~ 12. 31.(자금 소진 시 별도 안내문 게시)
  - \* 자금 소진 시 용자 및 이자지원이 불가
  - \* 사업 포기 등 잔액 발생 시 순차 지원
  - \* 접수일 이후 상시 접수이며 선착순 모집
- 접 수 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 전환 누리집\*에 온라인  
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- \* <https://www.ggenegy.or.kr>
  - \*\* 진흥원 에너지 전환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 문의는 신청문의 연락처 참조
- 구비서류 : 붙임 참조
- 신청문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031-996-9341)  
경기도 에너지산업과(031-8008-6034)
- 대출문의
  - 국민은행 도청점(031-248-6892)
  - 농협은행 콜센터(1661-3000, 1522-3000)
  - 신한은행 콜센터(1577-8000)